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5. 4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5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예 순

대전광역시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5월 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7년 5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
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
3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이 전부 개정되어
2006. 6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에서 인용하고
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

-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 함.
- 안 제3조, 별표 1, 별표 2, 제명에서는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, 낫표 등을 정비 함.

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·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. 12. 31 제정되어 운영해 오는 조례로서
-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이 2006. 5. 30 전부 개정되어 2006. 6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,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제명, 띄어쓰기, 낫표 등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